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서도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

발의의원 : 서도원 의원,

박주용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임산부 탑승 차량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 및 주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근거하여,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가정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임신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~9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·「모자보건법」·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른다.
2. “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본청, 직속기관, 읍·면 및 읍·면 출장소
 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방공단
  - 다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3. “관리주체”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.
4. “임산부 우선주차구역”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이란

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주차장 안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장려·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)** 군수는 주차장 면적 및 주차 대수 규모 등 그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)** ① 관리주체는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조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, 임산부 탑승차량이 알아보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6조(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)**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가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 우선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기준, 발급의 절차 등은 군수가

정한다.

**제7조(우선주차구역 이용)** 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차량 내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
2.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자보건수첩
3. 탑승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뱃지 및 신분증
4.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
5. 그 밖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군수가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

**제8조(위반차량 조치)** 관리주체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9조(비용부담)**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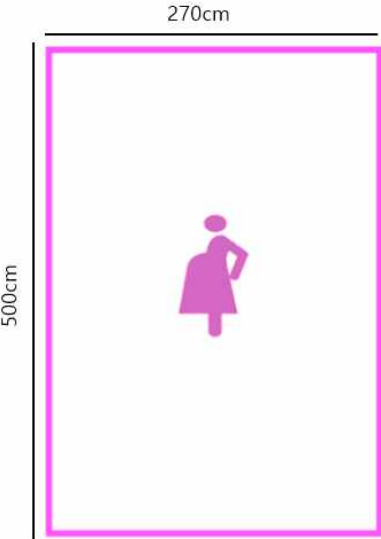

**제2조(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본다.

**제3조(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)** 이 조례 시행 당시

공공시설 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[별표]

우선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 기준(제5조제3항 관련)

구분	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바닥표시	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
규격	- 폭 270cm 이상 × 길이 500cm 이상 (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)	- 가로 60cm × 세로 50cm
색상	- 분홍색 계열 실선	- 테두리 및 글씨(분홍색), 바탕(흰색)
비고	-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환경에 맞게 설치 가능	
예시		

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법률)」(2024.1.23. 일부개정, 2024.4.24. 시행)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「모자보건법(법률)」(2024.1.2. 일부개정, 2025.1.3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임산부의 신고 등)**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법률)」(2024.12.20. 일부개정, 2025.12.21. 시행)

**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4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관내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.
- 달성군 내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파악된 현황은 총 25면('15년 기준, 표 참조)<sup>1)</sup>
  - ☞ 10년 경과한 현재, 추가로 설치·운영되는 현황은 부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움
- 따라서 추가 설치 시 한시적으로 도색·시설물 비용<sup>2)</sup> 투입 예상(3억원 미만)
  - (※1면당 도색 : 450천원, 표지판 40천원(조달청 기준))

〈표〉 달성군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현황('15년 기준)<sup>1)</sup>

구분	임산부 전용주차 장소	면수	설치년도
본 청	임산부 전용주차장 2면	4	2013
보건소	보건소 전면 주차장	1	2015
회원읍	회원읍사무소 민원실 앞 1면	1	2013
논공읍	논공읍보건지소 입구	1	2013
다사읍	다사읍사무소 앞, 다사보건지소 앞	2	2013
가창면	가창보건지소 앞	1	2014
하빈면	하빈면사무소	1	2013
옥포면*	옥포면사무소, 건강증진센터	2	2013
현풍면*	현풍면사무소 앞	1	2013
유가면*	유가면사무소 주차장	2	2014
구지면	구지면사무소	1	2013
회원읍	회원동산 공용 주차장, 회원휴양림 주차장	4	2015
유가면*	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용 주차장	4	2015
<b>합 계</b>			25

(자료 : 보건소)

\*'18년, 면에서 읍으로 승격(유가, 옥포, 현풍)

작성 자

소 속 및 직 위      달 성 군 의 회 의 원      성 명 (연 락 처)      서 도 원 (☎ 2291)